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[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번호	2176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1. 12. 23.

발 의 자 : 윤영희, 김경완

강수정, 조윤형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책지원관 항목을 신설함.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1) 조례안 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6조”를 “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6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7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</u> <u>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u> <u>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u> <u>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 <u>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

현행규칙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

(제정) 1995.03.17 의회규칙 제 3호
(전문개정) 2006.07.27 의회규칙 제 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회사무국)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
3.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
4.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5. 예산의 편성, 집행,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6. 의회청사·시설, 장비의 유지관리
7.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8. 문서, 보안 및 관인·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
9.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
10.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보좌
11.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 및 위원회 회부
12. 의결문서의 보존관리
13. 회의록 작성·발간·배부·보존관리 및 녹음·열람·복사 관리
14. 회의장 질서유지,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
15.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
16.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
17.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
18.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
19. 회의의 중계,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
20.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
21.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
22.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
23.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
2. 행정사무감사·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
3.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
4.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5.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의 운영
6. 의원의 구정질문·질의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
7. 진정 등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
8.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

부 칙(2006. 7. 27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